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31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
판 결

사 건 2023가단247091 소유권말소등기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대한민국

3. ○○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○○ 담당변호사 양○○

4. ○○○○○○공단

5. ○○○○○공단

변 론 종 결 2024. 7. 26.

판 결 선 고 2024. 9. 6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12. 16. 접수 제56886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나. 피고 대한민국, 피고 ○○○○○○공단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위 가.항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31

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,

다. 피고 ○○시, 피고 ○○○○○공단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위 가.항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2023. 10. 31.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선해한다)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3. 5. 7. 별지 목록 제1, 3항 기재 각 부동산(이하 별지 목록 제○항 기재 부동산을 '이 사건 제○부동산'이라 하고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, 2014. 9. 23.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, 2013. 12. 26.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, 2014. 9. 2.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친 사람이다. 피고 B은 원고의 남편이다.

나. 피고 B의 채권자인 C, D, E(이하 'C 등'이라 한다)는 원고[1]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(이하 '선행소송'이라 한다)를 제기하여, '피고 B이 처인 원고에게 이 사

1) 이 사건의 당사자지위를 기준으로 기재한다. 이하 같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31

건 각 부동산 중 각 1/2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바, C 등은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선행소송 소장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.'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. 선행소송 제1심(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12572호)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, 위 법원은 2021. 9. 28. C 등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(이하 '선행 1심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하였다.

다. 선행 1심판결이 항소기간 경과로 2021. 10. 14. 확정되자,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12. 16. 접수 제56886호로 '2021. 10. 14. 확정판결', 즉 선행 1심판결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각 등기'라 하고, 그중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 중 각 1/2지분에 관한 등기를 '이 사건 제1 내지 4등기'라 한다)가 마쳐졌다.

라. 그 후 ①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 중 피고 B 명의의 각 1/2지분에 관하여, 피고 대한민국(처분청 분당세무서장)의 2022. 2. 7. 압류, 피고 ○○시(처분청 ○○구청장)의 2022. 12. 5. 압류, 피고 대한민국(처분청 ○○○○지방검찰청)의 2022. 12. 6. 압류, 피고 ○○○○○○공단(이하 '피고 ○○'라 한다)의 2023. 2. 23. 압류, 피고 대한민국(처분청 ○○지방검찰청 ○○지청)의 2023. 6. 13. 압류, 피고 ○○○○○공단(이하 '피고 ○○공단'이라 한다)의 2023. 7. 10. 압류에 관한 각 등기가 마쳐졌고, ② 이 사건 제5부동산 중 피고 B 명의의 1/2지분에 관하여, 피고 대한민국(처분청 ○○세무서장)의 2022. 2. 7. 압류, 피고 ○○의 2023. 6. 19. 압류에 관한 등기가 각 마쳐졌다.

마. 한편 원고는 선행 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고, 선행소송 항소심(수원지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31

방법원 2022나52393호)은 2023. 2. 3. '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, C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자력이 없어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C 등의 대위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.'는 이유로 선행 1심판결을 취소하고 C 등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(이하 '선행 항소심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하였다. C 등은 선행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, 2023. 6. 1. 위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2023. 6. 2. 0시에 선행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는 형식적으로 확정된 선행 1심판결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인데, 원고의 추완항소에 따라 선행 1심판결을 취소하고 C 등의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선행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선행 1심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므로, 이 사건 각 등기는 등기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에게, 이 사건 각 등기의 등기명의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, 피고 ○○는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, 피고 ○○시, 피고 ○○공단은 이 사건 제1 내지 4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,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31

나. 피고 ○○시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 ○○시는, 피고 B이 지방세를 체납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 중 피고 B 명의의 각 1/2지분을 압류한 것이므로, 피고 B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4등기가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인 이상, 피고 ○○시 주장과 같은 사유로는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, 피고 ○○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피고 ○○공단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 ○○공단은, 이 사건 제5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B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협력하여 신축하였으므로 공동으로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.

피고 ○○공단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제5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,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제5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 ○○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피고 대한민국, 피고 ○○, 피고 ○○공단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 대한민국, 피고 ○○, 피고 ○○공단은, 선행소송에서 C 등의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무자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일 뿐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2지분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된 것이 아니므로, 선행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31

다.

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등기가 마쳐진 등기원인이 바로 선행 1심판결인 이상, 선행 1심판결을 취소하는 선행 항소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등기는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C 등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 아니라 그 소가 각하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각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.

나아가 피고 대한민국, 피고 ○○, 피고 ○○공단의 위 주장을 이 사건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,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/2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 대한민국, 피고 ○○, 피고 ○○공단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31

부동산 목록

1. ○○시 ○○구 F 대 101㎡

2. ○○시 ○○구 G 대 136㎡

3. ○○시 ○○구 H 대 41㎡

4. ○○시 ○○구 I 대 56㎡

5. ○○시 ○○구 F, G, H, I에 있는 J건물 K동 주건축물 L동

 [도로명주소] ○○시 ○○구 M

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단독주택

 지1층 161.49㎡

 1층 15.12㎡

 2층 143.57㎡

 3층 143.57㎡

 4층 90.4㎡. 끝.